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 관 명 (부 서 명)	환경부 (대기관리과)
연 월 일	2021. . .

법 제 처 심 사 전

1. 개정이유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허가조건 위반, 비산배출시설 및 휘발성유기화합물배출시설의 조치명령 미이행 등 위반사항에 대해 허가취소, 조업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제1항제3호의2, 제38조의2제9항, 제44조제10항이 신설('21.4.13 공포, '21.10.14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행정처분 기준을 구체화하고, 비산배출시설 신고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아울러, 저장시설 탄화수소(THC) 관리를 위한 고정지붕형저장시설의 배출허용기준이 비용 효과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내부부상지붕형저장시설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 방법에 가스처리시설 연결 처리 대신 적용할 수 있는 부상지붕과 저장시설 내벽 사이의 틈새 누출 방지, 개구부의 밀폐 조치 등의 시설 보완 방법을 추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허가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세부적인 행정처분 기준을 정함(안 별표 36 제2호가목 3))

나. 비산배출시설, 휘발성유기화합물배출시설 조치명령 미이행 등 조업정지 대상 위반행위에 대해 위반횟수별 행정처분 세부 기준을 정함(안 별표 36 제2호다목1)라), 제2호다목5)가), 제2호다목5)라))

다. 비산배출시설 신고 시 공장등록증은 행정청에서 행정정보 공동 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함(안 제51조의2제2항)

라. 저장시설의 배출허용 적용 기준 개선(안 별표 8 제2호가목 비고 11)

- 고정지붕형 저장시설 중 내부부상지붕형 저장시설과 방지시설을 같이 연결하는 경우 등에는 탄화수소(THC) 농도를 95% 이상 저감하는 경우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마. 내부부상지붕형 저장시설의 비산배출 저감을 위한 시설관리기준 개선(안 별표 10의2 제3호가목3)나) (6), (7), (8), 같은 호 다목2)나) (6), (7), (8) 및 비고6))

- 1) 기 운영중인 내부부상지붕형 저장시설의 오염물질 배출 저감방법으로 가스 처리시설 설치만 규정되어 운영 중인 개별 저장시설 특성이 고려되지 못함에 따라, 저장시설 종류, 저장물질에 따라 오염물질 저감조치를 선택 적용할 수 있도록 함.

- 2) 내부부상지붕형 저장시설의 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처리시설 설치 외, 누설을 줄이기 위한 시설 보완 조치를 추가함.

- 벤젠, 톨루엔 등을 일정비율 이상 함유한 유체를 저장하는 내부부상지붕형 저장시설은 처리시설을 설치하여 가스를 처리하고, 그 외 시설은 처리시설을 설치하여 가스를 처리하거나, 저장시설 내벽과 부상지붕 사이의 틈새 누설 방지, 부상지붕 개구부 밀폐 강화 등의 시설보완 조치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중전의 제2항) 중 “발급하여야”를 “발급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중전의 제4항) 중 “제3항제1호”를 “제4항제1호”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중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발급하여야”를 “발급해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받은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의3제3항에 따른 공장등록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제61조 중 “법 제44조제6항 및 제10항”을 “법 제44조제5항 및 제13항”으로 한다.

별표 8 제2호가목 비고 중 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의 소분류에 따른 석유 정제품 제조업 및 세분류에 따른 기초 유기 화학물질 제조업에 해당하는 사업장에서 설치·운영 중인 저장시설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탄화수소(THC로서) 농도를 95% 이상 줄이는 경우에는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설치·운영 중인 저장시설에 대한 탄화수소(THC로서)의 배출허용기준은 사업장별 저장시설의 50%에 대해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며, 나머지 저장시설에 대해서는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 1) 방지시설에 내부부상 지붕(Internal Floating Roof)형 저장시설을 연결하는 경우
- 2) 안전상의 이유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배출허용기준을 지키기 어렵다고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별표 10의2 제3호가목3)나)에 (6)을 다음과 같이 한다.

- (6) 부상지붕 상부의 고정지붕에서 발생하는 배출가스를 1)나)에 따른 공정배출시설의 시설관리기준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이 경우 이 기준 시행 이전에 설치된 시설 중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자일렌(o-, m-, p- 포함) 농도의 합이 50wt% 이상 되는 유체를 저장하는 시설은 연차별로 처리시설을 해당 시설의 합계 대비 2022년까지 20%, 2023년까지 40%, 2024년까지 70%, 2025년까지 100% 설치를 완료해야 하며, 그 외 시설은 1)나)에 따른 처리를 위한 처리시설 설치 또는 (7) 및 (8)의 기준에 따른 부상지붕의 시설 보완 조치를 해당 시설의 합계 대비 2022년까지 20%, 2023년까지 40%, 2024년까지 70%, 2025년까지 완료해야 한

다.

별표 10의2 제3호가목3)나)에 (7) 및 (8)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6)에 따라 시설 보완 조치를 하는 경우, 저장탱크 내벽과 부상지붕의 상단 가장자리에는 폼 밀봉장치(foam seal) 또는 유체충진형 밀봉장치를 설치하고, 상부에는 와이퍼 밀봉장치(wiper seal)를 설치해야 한다.

(8) (6)에 따른 시설 보완 조치 중 부상지붕의 개구부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가) 맨홀(access hatch)에는 덮개(cover) 사이에는 개스킷(누설방지재)을 설치하고 덮개는 볼트(bolt) 접합방식으로 밀폐해야 한다.

(나) 고정지붕 지지대(fixed roof support column)와 부상지붕이 접촉하는 개구부(column well)에서 덮개상자(column well box)와 덮개(well cover) 사이에는 개스킷(누설방지재)을 설치하고 덮개 상자와 덮개는 볼트 접합방식으로 밀폐해야 한다.

(다) 부상지붕 지지대(fixed roof support column) 및 그 지지대와 부상지붕이 접촉하는 개구부(column well)에는 신축성 봉인장치(flexible fabric sleeve seal)를 설치해야 한다.

(라) 부상지붕 지지대(roof leg 또는 deck support)는 고정형으로 설치해야 한다.

(마) 부상지붕 회전방지용 기둥(guide pole)이 부상지붕과 접촉하는 개구부(pole well)에서 덮개상자(pole well box)와 덮개(well cover) 사

이에느 개스킷을 설치하고 덮개 상자(pole box)와 덮개(well cover)는 볼트 접합방식으로 밀폐해야 한다.

(바) 부상지붕 회전방지용 기둥(guide pole) 및 그 기둥과 부상지붕이 접촉하는 개구부(pole well)에는 봉인장치(sliding cover, pole wiper, pole sleeve 또는 pole float, wiper seal)를 설치하거나 신축성 봉인장치(flexible fabric sleeve seal)를 설치해야 한다.

(사) 부상지붕 회전방지용 지지선(Stainless wire)이 부상지붕과 접촉하는 개구부(wire well)에는 개스킷(누설방지재)를 설치해야 한다.

(아) 부상지붕에서 저장유체를 채취할 수 있는 부분(sample well)에는 봉인장치(slit fabric seal)를 설치하거나 개구면의 90% 이상을 덮을 수 있는 덮개를 설치해야 한다.

별표 10의2 제3호가목3)나)(7)을 (9)로 한다.

별표 10의2 제3호다목2)나)에 (6)을 다음과 같이 한다.

(6) 부상지붕 상부의 고정지붕에서 발생하는 배출가스를 1)나)에 따른 공정배출시설의 시설관리기준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이 경우 이 기준 시행 이전에 설치된 시설 중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자일렌(o-, m-, p- 포함) 농도의 합이 50wt% 이상 되는 유체를 저장하는 시설은 연차별로 처리시설을 해당 시설의 합계 대비 2022년까지 20%, 2023년까지 40%, 2024년까지 70%, 2025년까지 100% 설치를 완료해야 하며, 그 외 시설은 1)나)에 따른 처리를 위한 처리시설 설치 또는 (7) 및 (8)의 기준에 따른 부상지붕의 시설 보완 조치를 해당 시설의 합계 대비 2022년

까지 20%, 2023년까지 40%, 2024년까지 70%, 2025년까지 완료해야 한다.

별표 10의2 제3호다목2)나)에 (7) 및 (8)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6)에 따라 시설 보완 조치를 하는 경우, 저장탱크 내벽과 부상지붕의 상단 가장자리에는 폼 밀봉장치(foam seal) 또는 유체충진형 밀봉장치를 설치하고, 상부에는 와이퍼 밀봉장치(wiper seal)를 설치해야 한다.

(8) (6)에 따른 시설 보완 조치 중 부상지붕의 개구부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가) 맨홀(access hatch)에는 덮개(cover) 사이에는 개스킷(누설방지재)을 설치하고 덮개는 볼트(bolt) 접합방식으로 밀폐해야 한다.

(나) 고정지붕 지지대(fixed roof support column)와 부상지붕이 접촉하는 개구부(column well)에서 덮개상자(column well box)와 덮개(well cover) 사이에는 개스킷(누설방지재)를 설치하고 덮개 상자와 덮개는 볼트 접합방식으로 밀폐해야 한다.

(다) 부상지붕 지지대(fixed roof support column) 및 그 지지대와 부상지붕이 접촉하는 개구부(column well)에는 신축성 봉인장치(flexible fabric sleeve seal)를 설치해야 한다.

(라) 부상지붕 지지대(roof leg 또는 deck support)는 고정형으로 설치해야 한다.

(마) 부상지붕 회전방지용 기둥(guide pole)이 부상지붕과 접촉하는

개구부(pole well)에서 덮개상자(pole well box)와 덮개(well cover) 사이에 가스킷을 설치하고 덮개 상자(pole box)와 덮개(well cover)는 볼트 접합방식으로 밀폐해야 한다.

(바) 부상지붕 회전방지용 기둥(guide pole) 및 그 기둥과 부상지붕이 접촉하는 개구부(pole well)에는 봉인장치(sliding cover, pole wiper, pole sleeve 또는 pole float, wiper seal)를 설치하거나 신축성 봉인장치(flexible fabric sleeve seal)를 설치해야 한다.

(사) 부상지붕 회전방지용 지지선(Stainless wire)이 부상지붕과 접촉하는 개구부(wire well)에는 가스킷(누설방지재)을 설치해야 한다.

(아) 부상지붕에서 저장유체를 채취할 수 있는 부분(sample well)에는 봉인장치(slit fabric seal)를 설치하거나 개구면의 90% 이상을 덮을 수 있는 덮개를 설치해야 한다.

별표 10의2 제3호다목2)나)(7)을 (9)로 한다.

별표 10의2 비고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3호가목3)나)(6) 후단 및 같은 호 다목2)나)(6) 후단에 따른 연도별 처리시설 설치 또는 시설 보완 조치 비율을 저장시설 운용계획에 따라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환경청장과 협의하여 그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종완료 기한은 2025년을 준수해야 한다.

별표 10의3 제1호나목6)을 삭제한다.

별표 36 제2호가목3)부터 16)까지를 각각 4)부터 17)까지로 하고, 같은 목에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 차	2 차	3 차	4 차
3) 제23조제9항에 따른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법 제36조제1항제3호의2	경고	조업정지 1개월	조업정지 3개월	허가 취소

별표 36 제2호가목 비고 제2호 중 “11)나)”를 “12)나)”로 하고, 같은 비고 제3호 중 “3), 4)”를 “4), 5)로, “6), 10) 및 11)가)”를 “7), 11) 및 12)가)”로 하며, 같은 비고 제4호 중 “6)가)”를 “7)가)”로 한다.

별표 36 제2호다목에 1)과 5)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다. 비산배출시설, 비산먼지 발생사업 및 휘발성유기화합물의 규제와 관련된 행정처분 기준

위 반 사 항	근거법령	행 정 처 분 기 준			
		1 차	2 차	3 차	4 차
1) 법 제38조의2에 따른 비산배출시설과 관련된 다음의 경우					
가)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비산배출시설의 설치신고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38조의2제9항제1호	경고	경고	조업정지 10일	조업정지 20일
나) 법 제38조의2제5항에 따른 비산배출시설의 시설관리기준을 지키지 않은 경우	법 제38조의2제9항제2호	경고	조업정지 10일	조업정지 20일	조업정지 20일
다) 법 제38조의2제4항에 따른 비산배출시설의 정기점검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38조의2제9항제3호	경고	경고	조업정지 10일	조업정지 20일
라) 법 제38조의2제8항에 따른 시설의 개선 등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38조의2제9항제4호	조업정지 10일	조업정지 20일	조업정지 30일	조업정지 30일
5) 법 제44조 또는 제45조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 규제와 관련된 다음의 경우					
가) 제44조제1항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의 설치신고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44조제10항제1호	경고	경고	조업정지 10일	조업정지 20일
나) 제44조제5항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억제·방지시설의 설치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4조제10항제2호	개선명령	조업정지 10일	조업정지 20일	
다) 제44조제5항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억제·방지시설 설치 등의 조치를 하였으나 법 제44조제6항 및 제7	법 제44조제10항제2호	개선명령	개선명령	조업정지 10일	

위 반 사 항	근거법령	행 정 처 분 기 준			
		1 차	2 차	3 차	4 차
항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라) 법 제44조제9항에 따른 시설의 개선 등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44조제10항제3 호	조업정지 10일	조업정지 20일	조업정지 30일	조업정지 30일

별지 제20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0호의5서식 제1쪽 중 아목을 자목으로 하고, 같은 쪽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 외부부상지붕형 저장시설의 부상지붕 비산누출시설 누출점검 운영기록사항

배출가스 발생시설			시설명	광학가스탐지 모니터링 일시	누출점검 일시	누출점검 결과
비산배출시설	세부시설	주요 배출공정				

별지 제20호의6서식 첨부서류란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옥내 및 야외도장시설 도료 및 희석제 월별 사용량 1부.

별지 제20호의7서식 중 제6호를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1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비산배출시설 설치·운영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신고자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사무실주소			사무실 전화번호						
	대표자성명			생년월일						
	대표자주소			전화번호						
신고 내용	업종명(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 코드)			관리대상물질						
	설치예정일			년	월	일	가동시작예정일	년	월	일
	비산배출시설									
	비산배출 시설	세부시설	주요 배출공정	관리대상 물질	규모	수량	주요 시설관리기준 적용내용			
	비산배출시설 관리계획									
비산배출 시설	세부시설	주요 배출공정	배출가스 처리시설	규모	수량	기타 비산배출시설 관리계획 (시설관리기준 제외사유 등)				

「대기환경보전법」 제38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1조의2제1항에 따라 비산배출시설의 설치·운영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

귀하

제출서류	1. 제품생산 공정도 및 비산배출시설 설치명세서 1부 2. 비산배출시설별 관리대상물질 명세서 1부 3. 비산배출시설 관리계획서 1부 4. 별표 10의2 제1호가목3)에 따른 시설관리기준 적용 제외 시설의 목록 1부	수수료 없 음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의3제3항에 따른 공장등록증 명서 1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제출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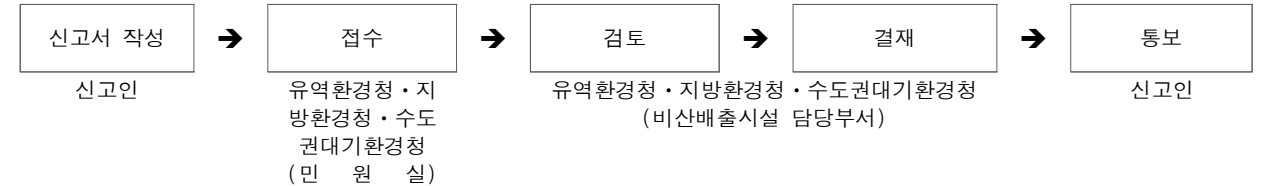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작성요령

기재할 내용이 많은 경우 세부내용을 붙임으로 첨부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 80g/㎡]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1조의2(비산배출시설의 설치 · 운영신고 및 변경신고 등) ①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비산 배출하는 배출시설(이하 “비산 배출시설”이라 한다)을 설치· 운영하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의 2서식의 비산배출시설 설치· 운영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 류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 환경청장에게 <u>제출하여야</u> 한다.	제51조의2(비산배출시설의 설치 · 운영신고 및 변경신고 등) ① ----- ----- ----- ----- ----- ----- ----- ----- <u>제출해야</u> -----.
1. ~ 4. (생략) <u><신설></u>	1. ~ 4. (현행과 같음) <u>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받은</u> <u>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u> <u>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전</u> <u>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u> <u>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u> <u>「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u> <u>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u> <u>조의3제3항에 따른 공장등록증</u> <u>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u> <u>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u>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별지 제20호의3서식의 비산배출시설 설치·운영 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생략)

④ 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신고 사유가 제3항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같은 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 전에, 같은 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0호의4서식의 비산 배출시설 설치·운영 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별지 제20호의3서식의 비산 배출시설 설치·운영 신고증명서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

-- 발급해야 -----.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⑤

제4항 제1호

⑤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비산배출시설 설치·운영 신고증명서에 변경신고사항을 적어 신고인에게 <u>발급하여야</u> 한다. 제61조(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 억제·방지시설 설치의 기준 등) 법 제44조제6항 및 제10항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 억제·방지시설의 설치 및 검사·측정결과의 기록·보존에 관한 기준 등은 별표 16과 같다.	⑥ ----- ----- 제5항 ----- ----- ----- ----- <u>발급해야</u> --- ---. 제61조(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 억제·방지시설 설치의 기준 등) 법 제44조제5항 및 제13항----- ----- ----- ----- -----.
---	--